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509008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347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5090089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1. A

2. B

변론 종결2016. 4. 20.

판결 선고2016. 5. 25.

주문

1. 피고 A,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상환계획표 변제기란에 기재된 일자가 도래하면, 같은 표 상환금란에 기재된 각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4. 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4. 2. 6. 접수 제56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D,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91,472,774원 및 그 중 89,721,229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E는

1)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9,000,000원을 한도로, 70,499,648원 및 그 중 68,806,163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7,000,000원을 한도로, 20,973,126원 및 그 중 20,915,066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D, C, E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 D, C, E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원금 15,178,376원, 개시 전 이자 144,761원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보증채무의 부종성(민법 제430조)의 법리에 예외를 두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 채무에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다.

채무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위 신용보증기금법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란 단지 채무 액수가 감경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과 같이 채무의 변제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은 2015. 7. 9. 2014회합27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시인한 채권 합계 90,135,390원(채권 원금 89,284,562원, 개시 전 이자 850,828원) 중 74,812,373원은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원금 15,178,376원, 개시 전 이자 144,761원으로 감축하여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만으로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변경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변제기 유예를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구상금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 도래하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채무 자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장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들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장래이행 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상환계획표 변제기란에 기재된 일자가 도래하면, 같은 표 상환금란에 기재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는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인 2014. 2. 6.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피고 D 사이에는 이미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13. 11. 1.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4. 1.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4. 5. 12.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1)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상록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종합하면, 피고 D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203,777,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89,721,000원, 신한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론 채무 1,427,000원, 상록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0,000,000원, 보광훼미리카트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채권최고액 50,000,000원,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150,000,000원, 합계 321,148,000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소외 회사가 국세체납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한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내지 사정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 C,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부상준

별지